

대경대학교 총장명의 자격검정 운영 규정

제정 2011. 10. 10. 개정 2012. 10. 18.
개정 2013. 3. 1. 개정 2013. 7. 1.
개정 2013. 11. 15. 개정 2015. 1. 23.
개정 2016. 1. 6. 개정 2016. 12. 2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경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총장명의 자격검정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증의 종목, 등급 및 명칭) 자격 종목, 등급 및 명칭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병과지도사
2. <삭제 2016.1.6.>
3. <삭제 2016.1.6.>
4. 콘택트렌즈관리사
5. <삭제 2015.1.23.>
6. 보안검색사
7. <삭제 2015.1.23.>
8. <삭제 2016.1.6.>
9. <삭제 2016.1.6.>
10. 법률소양사 <신설 2013.7.1.>
11. 방과후 교사(골프) <신설 2013.7.1.>
12. 헤어디자인컷 <신설 2015.1.23.>
13. <삭제 2016.1.6.>
14. <삭제 2016.1.6.>
15. 스포츠건강지도사 <신설 2015.1.23.>
16. 시기능훈련지도사 <신설 2015.1.23.>
17. 뮤지컬지도사 <신설 2015.1.23.>
18. 헬스휘트니스지도사 <신설 2015.1.23.>
19. 동물사육관리사 <신설 2015.1.23.>
20. <삭제 2016.1.6.>
21. 주류제조전문가 <신설 2015.1.23.>
22. 상담심리재활사 <신설 2015.1.23.>

- 23. 몬테소리지도자 <신설 2015.1.23.>
- 24. 미술치료사 <신설 2016.1.6.>
- 25. 아로마 컬러 리딩 자격증 <신설 2016.1.6.>
- 26. 연극교육 지도사 자격증 <신설 2016.1.6.>
- 27. 연기교육 지도사 자격증 <신설 2016.1.6.>

제 2 장 자격증 관리 및 운영 조직

제3조(조직) 자격증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자격검정사무국(교육개발팀, 운영관리팀)을 둔다.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전임교원으로 구성 하며 위원장은 산학협력처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3.>

-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1.23.>
-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

제5조(조직의 역할) 조직의 각 분야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조 직	구 성	역 할
운영위원회	자격종목전문가	운영 및 제 규정 전반에 대한 중요한 의사를 심의 결정하는 기구
사무국	분야별 전문가	운영위원장을 보좌하고, 제도운영 전반에 관한 기획, 집행,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다.
교육개발팀	자격종목별 관련 교수 자격종목별 실무분야전문가	- 필기 및 실기시험 문제 개발 및 출제 - 실기시험 심사, 채점 및 면접 - 시험의 난이도 조정, 범위 및 출제방향 설정 및 보수교육
운영관리팀	일반 행정전문가	시험시행에 대한 홍보, 행정업무관리

제5조의2(주요업무) 주요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필기 및 실기시험 문제 개발 및 출제
2. 필기 및 실기시험 심사, 채점 및 면접
3. 시험의 난이도 조정, 범위 및 출제방향 설정
4. 보수교육

[본조신설 2016.12.23.]

제6조(검정담당인력 자격기준) 민간자격 검정담당 인력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 교육개발팀

구 분	자 격 기 준
운영위원	① 관련 분야 박사학위, 기술사 또는 기능장 소유자 ② 대학(교)의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③ 관련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④ 제①~③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교육개발팀	① 관련 분야 박사학위, 기술사 또는 기능장 소유자 ② 대학(교)의 관련분야 전임강사이상으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③ 관련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자 ④ 관련분야 강의 및 실무경력이 각각 3년 이상인 자 ⑤ 제①~④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필기시험 감독 및 관리위원

본 검정시험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단, 관리위원은 시험장 진행사항을 총괄 위임받아 취창업운영위원회에서 파견되는 자 <개정 2016.12.23.>

제 3 장 자격운영 방향

제7조(자격중 검정기준) 자격종목별 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병과지도사

떡, 한과, 폐백 이바지 음식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이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2. <삭제 2016.1.6.>

3. <삭제 2016.1.6.>

4. 콘택트렌즈 관리사

콘택트렌즈 처방과 관리에 전문지식과 임상기술을 가지고 이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5. <삭제 2015.1.23.>

6. 보안검색사

보안검색에 필요한 문형금속 탐지기, X-Ray기 등의 시스템경비에 필요한 기기의 작동능력과 관련지식을 소유하고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7. <삭제 2015.1.23.>

8. <삭제 2016.1.6.>

9. <삭제 2016.1.6.>

10. 법률소양사

법률일반, 형법,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소양이 있는 자로써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11. 방과후 교사(골프)

어린이 및 청소년의 방과후 골프 수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12. 헤어디자이너 <신설 2015.1.23.>

여성컷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이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13. <삭제 2016.1.6.>

14. <삭제 2016.1.6.>

15. 스포츠건강지도사 <신설 2015.1.23.>

건강관리와 근,골격계 재활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이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16. 시기능 훈련 지도사 <신설 2015.1.23.>

시기능 훈련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시기능 훈련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17. 뮤지컬지도사 <신설 2015.1.23.>

뮤지컬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이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18. 헬스휘트니스지도자 <신설 2015.1.23.>

건강관리를 위한 상담기법 및 운동처방 방법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19. 동물사육관리사 <신설 2015.1.23.>

각종 애완동물의 사육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이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20. <삭제 2016.1.6.>

21. 주류제조전문가 <신설 2015.1.23.>

주류제조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이에 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22. 상담심리재활사 <신설 2015.1.23.>

장애인 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갖는 아동 및 성인에 대한 전문적 상담과 심리·발달 진단 등을 통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23. 몬테소리지도자 <신설 2015.1.23.>

몬테소리 교육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이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24. 미술치료사 <신설 2016.1.6.>

사회복지 및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25. 아로마 컬러 리딩 자격증 <신설 2016.1.6.>

아로마와 컬러를 함께 리딩하는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피부미용 직무 중 고객상담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26. 연극교육 지도사 자격증 <신설 2016.1.6.>

초, 중등교육을 포함한 해당기관을 비롯한 자격증의 모든 범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공연예술, 연기예술의 이해를 바탕으로 연극교육지도사로서의 자질 및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27. 연기교육 지도사 자격증 <신설 2016.1.6.>

초, 중등교육을 포함한 해당기관을 비롯한 자격증의 모든 범위에 대한 연기 표현의 전문적인 지식 및 연기예술의 이해를 바탕으로 연기교육지도사로서의 자질 및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제8조(응시자격) 자격종목별 응시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병과지도사

가. 대학(교)의 조리 관련 학과 재학생 혹은 졸업생

나. 대학(교)의 평생교육원이나 사회교육원 및 사설학원 등의 교육기관에서 전통병과 관련 교육 8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

2. 삭제 <2016.1.6.>

3. 삭제 <2016.1.6.>

4. 콘택트렌즈 관리사

가. 대학(교)의 관련 학과 재학생 혹은 졸업생

나. 해당학과 콘택트렌즈 임상관련 실습을 60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

5. 삭제 <2015.1.23.>

6. 보안검색사

가. 대학(교)의 관련 학과 재학생 혹은 졸업생

나. 경호경비, 보안검색 관련업체 2년 이상 종사자

7. 삭제 <2015.1.23.>

8. 삭제 <2016.1.6.>

9. 삭제 <2016.1.6.>

10. 법률소양사 <신설 2013.7.1.>

가. 경찰행정과 재학생으로써 3학기 이상 60학점을 이수한 자

11. 방과후 교사(골프) <신설 2013.7.1.>

가. 대학의 생활체육 및 골프 관련 학과 재학생 혹은 졸업생

나. 대학(교)의 평생교육원이나 사회교육원 및 사설학원 등의 교육기관에서 체육 관련 교육 16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

12. 헤어디자인컷 <신설 2015.1.23.>

가. 대학(교)의 관련 학과 재학생 혹은 졸업생

13. 삭제 <2016.1.6.>

14. 삭제 <2016.1.6.>

15. 스포츠건강지도사 <신설 2015.1.23.>

가. 대학(교)의 관련 학과 재학생 혹은 졸업생

나. 대학(교)의 평생교육원이나 보육교사교육원 및 사설학원 등의 교육기관에서 스포츠건강관리 관련 교육 10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

16. 시기능 훈련 지도사 <신설 2015.1.23.>

가. 대학(교)의 관련 학과 재학생 혹은 졸업생

나. 대학(교)의 안경광학과 시기능 훈련기초와 시기능 훈련응용교과목 및 교육 8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

17. 뮤지컬지도사 <신설 2015.1.23.>

가. 대학(교)의 관련 학과 재학생 혹은 졸업생

나. 대학(교)의 평생교육원이나 사회교육원 및 사설학원 등의 교육기관에서 뮤지컬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

18. 헬스휘트니스지도자 <신설 2015.1.23.>

가. 대학(교)의 관련 학과 재학생 혹은 졸업생

나. 대학(교)의 평생교육원이나 사회교육원 및 사설학원 등의 교육기관에서 체육 관련 교육을 16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

19. 동물사육관리사 <신설 2015.1.23.>

가. 대학(교)의 관련 학과 재학생 혹은 졸업생

나. 대학(교)의 평생교육원이나 사회교육원 및 사설학원 등의 교육기관에서 동물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소지한 자

20. <삭제 2016.1.6.>

21. 주류제조전문가 <신설 2015.1.23.>

가. 대학(교)의 관련 학과 재학생 혹은 졸업생 중 주류제조와 관련된 학과목을 6학점이상 이수한 자

나. 대학(교)의 주류제조 관련 교육 50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우리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주류 양조 과정을 이수한 자

22. 상담심리재활사 <신설 2015.1.23.>

가. 대학(교)의 관련 학과 재학생 혹은 졸업생

나. 대학(교)의 평생교육원이나 보육교사교육원 및 사설학원 등의 교육기관에서 심리학, 의사소통장애진단, 아동상담과 관련 교육 8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

23. 몬테소리지도자 <신설 2015.1.23.>

가. 대학(교)의 관련 학과 재학생 혹은 졸업생

나. 대학(교)의 평생교육원이나 사회교육원 및 사설학원 등의 교육기관에서 몬테소리 일상, 감각, 언어, 수과학, 문화영역의 교육 4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

24. 미술치료사 <신설 2016.1.6.>

가. 사회복지 및 보육에 관심이 있는 자로 대학(교)의 관련 학과 재학생 혹은 졸업생

나. 영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다. 평생교육원 혹은 사설학원 등의 교육기관에서 미술치료 관련 교과목 6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

25. 아로마 컬러 리딩 자격증 <신설 2016.1.6.>

가. 대학(교)의 뷰티관련 학과 재학생 혹은 졸업생

나. 대학(교)의 평생교육원이나 사회교육원 및 사설학원 등의 교육기관에서 컬러 리딩 관련 교육 8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

26. 연극교육 지도사 자격증 <신설 2016.1.6.>

가. 대학(교)의 연극영화과 재학생 혹은 졸업생

나. 비전공자는 연극교육을 이룰 수 있는 공연단체를 통해 2회 이상 혹은 3년 이상 연극 공연을 경험한 자(조연 이상), 대학(전문대 및 4년제)을 졸업하고 3년 이상의 공연예술 분야 활동 경력자

27. 연기교육 지도사 자격증 <신설 2016.1.6.>

가. 대학(교)의 연극영화과 재학생 혹은 졸업생

나. 비전공자는 연극교육을 이룰 수 있는 공연단체를 통해 2회 이상 혹은 3년 이상 연극 공연을 경험한 자(조연 이상), 대학(전문대 및 4년제)을 졸업하고 3년 이상의 공연예술 분야 활동 경력자

제9조(검정과목 및 합격기준) 검정과목 및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병과지도사

검정방법	검정과목	문항 수	합격기준
필기 (객관식)	식품학	50	60점 이상 (과목별 과락 없음)
	조리의 원리		
	위생학		
실기 (작업형)	떡	2	
	한과		
	폐백 이바지 음식		

※ 필기시험 면제 : 조리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2. <삭제 2016.1.6.>

3. <삭제 2016.1.6.>

4. 콘택트렌즈 관리사

검정방법	검정과목	문항 수	합격기준
필기 (객관식)	시기해부 생리학	100	60점 이상 (과목별 과락 없음)
	안기능검사		
	콘택트렌즈 광학		
	콘택트렌즈학 및 실습		
실기 (작업형)	임상실습 대상자 렌즈처방 및 처방전 작성	1	

5. <삭제 2015.1.23.>

6. 보안검색사

검정방법	검정과목	문항 수	합격기준
필기	보안검색학	25	60점 이상 (과목별 과락 없음)
	장비원리		
	장비운용		
실기	안내조 /물품검색조 인원검색조	20	

7. <삭제 2015.1.23.>

8. <삭제 2016.1.6.>

9. <삭제 2016.1.6.>

10. 법률소양사 <신설 2013.7.1.>

검정방법	검정과목	문항 수	합격기준
필기 (객관식)	법학개론	50문항	60점 이상
	민법총칙		
	형법		
	형사소송법		

11. 방과후 교사(골프) <신설 2013.7.1.>

검정방법	검정과목	문항 수	합격기준
실기 (작업형)	퍼팅	2	70점 이상 (과목별 과락 없음)
	스윙		

12. 헤어디자이너 <신설 2015.1.23.>

검정방법	검정과목	문항 수	합격기준
필기	컷 이론	30	60점 이상 (과목별 과락 없음)
실기	여성컷 (컷의 기본형)	1	

13. <삭제 2016.1.6.>

14. <삭제 2016.1.6.>

15. 스포츠건강지도사 <신설 2015.1.23.>

검정방법	검정과목	문항 수	합격기준
필기 (객관식)	건강과 운동과학(건강관리학)	50	60점 이상 (과목별 과락 없음)
	스포츠지도법		
	상해예방과 응급처치		
실기 (작업형)	도구운동치료	2	
	도수치료		

16. 시기능 훈련 지도사 <신설 2015.1.23.>

검정방법	검정과목	문항 수	합격기준
필기 (객관식)	시기능 훈련 기초	70	60점 이상 (과목별 과락 없음)
	시기능 훈련 응용		
실기	시기능 훈련법	30	

17. 뮤지컬지도사 <신설 2015.1.23.>

검정방법	검정과목	문항 수	합격기준
필기	뮤지컬기초이론	10	60점 이상 (과목별 과락 없음)
실기	뮤지컬댄스	3	
	뮤지컬가창		
	뮤지컬연기		

18. 헬스휘트니스지도사 <신설 2015.1.23.>

검정방법	검정과목	문항 수	합격기준
실기	저항운동	10	60점 이상 (과목별 과락 없음)
	프리웨이트		

19. 동물사육관리사 <신설 2015.1.23.>

검정방법	검정과목	문항 수	합격기준
필기 (객관식)	동물원 업무의 이해	50	60점 이상 (과목별 과락 없음)
	동물관련 법규		
	특수동물 질병관리		
실기	동물사육	2	
	동물조련		
	동물보건		

20. <삭제 2016.1.6.>

21. 주류제조전문가 <신설 2015.1.23.>

검정방법	검정과목	문항 수	합격기준
필기 (객관식)	주류 일반론	50	60점 이상 (과목별 과락 없음)
	주류 양조학개론		
	주세법		
실기	주류의 성분분석	2	
	주류 양조학		
	주세 실무		

22. 상담심리재활사 <신설 2015.1.23.>

검정방법	검정과목	문항 수	합격기준
필기	심리학개론	50	60점 이상 (과목별 과락 없음)
	의사소통장애진단		
	아동상담		

23. 몬테소리지도사 <신설 2015.1.23.>

검정방법	검정과목	문항 수	합격기준
필기	몬테소리일상	-	학점이수로 판정
	몬테소리감각		
	몬테소리언어		
	몬테소리수과학		
	몬테소리문화		
실기	몬테소리일상	작업파일 제출	작업파일 4개이상 제출 판정
	몬테소리감각		
	몬테소리언어		
	몬테소리수과학		
	몬테소리문화		

24. 미술치료사 <신설 2016.1.6.>

검정방법	검정과목	문항 수	합격기준
필기 (객관식)	미술치료 개론	각 과목당 40문항 (총 120문항)	각 응시과목별 40점 이상 (전체 응시과목 평균 60점 이상)
	그림에 의한 심리진단		
	아동, 성인, 가족 미술치료		
미술치료 연수수료	집단미술치료 20시간		시간 이수

25. 아로마 컬러 리딩 자격증 <신설 2016.1.6.>

검정방법	검정과목	문항 수	합격기준
필기 (객관식)	아로마 개론	50	60점 이상 (과목별 과락 없음)
	고객상담		
	컬러테라피		
실기 (작업형)	컬러 리딩 실무	평가 기준표에 따른 채점	
	상담지 작성		

26. 연극교육 지도사 자격증 <신설 2016.1.6.>

검정방법	검정과목	문항 수	합격기준
필기	연극의 이해와 원리	30	60점 이상 (과목별 과락 없음)
	교육연극 개론		
	공연예술 산업론		
실기	연극놀이	2 (택 2)	
	자유연기		
	희곡의 이해와 구성		

27. 연기교육 지도사 자격증 <신설 2016.1.6.>

검정방법	검정과목	문항수	합격기준
필기	연극의 이해	20	60점 이상 (과목별 과락 없음)
	교육연극의 이해		
	연기교육 방법론		
실기	자유연기	1	

제 4 장 실무능력평가 민간자격증 시험응시 요강

제10조(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방법) 응시 희망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응시 신청을 할 수 있다.

1. 응시 희망자는 미리 공고된 기간 내에 대경대학교 자격검정 취창업지원팀에서 원서를 교부하여 작성하고 응시료를 납부하면 접수처리 된다. <개정 2016.12.23.>

2. 응시 희망자는 원서접수시 자격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의 각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나. 대학(교)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다. 대학(교) 재학자는 재학증명서

라. 대학(교) 중퇴, 휴학자는 각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휴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재적증명서 등)

마. 실무경력으로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근무부서, 근무기간, 직명, 담당 업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

바. 법령으로 규정한 교육훈련기관의 이수자 및 이수예정자는 이수증명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등

제11조(자격시험 공지사항 공고) 시험은 년 2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3.>

1. 시험일시, 장소, 준비물 등은 시험 시행 전에 지정 게시판이나 홈페이지(<http://www.tk.ac.kr>)에 공고한다.

2. 민간자격 시험에 관련된 모의 시험문제는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3. 응시자는 반드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수시로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2조(응시자 유의사항 및 결격사유) 응시자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야 하며, 각호를 어길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1. 접수 시 본인의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2.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3. 응시자 및 합격자의 요구 서류는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응시자격 및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4.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 당일 주민등록증 및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신분증 미지참시에는 입실할 수 없다.

5.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서 시험준비를 하여야 한다.

6. 응시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험 중 이동할 수 없다.

7. 응시자는 시험장 내에 핸드폰, 전자수첩 등을 지참할 수 없다.

8. 응시자의 답안지 및 점수는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9. 시험 중 부정 행위자는 퇴실되며, 향후 1년간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10. 본 대학교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것이 확인될 경우 그 자격증은 무효 처리된다.

11. 필기시험 합격자는 2년 동안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제 5 장 합격자 공고 및 자격증 교부

제13조(합격자 공고 및 등록) ① 합격자 명단은 학과에 통보하며, 개별 통보는 하지 않는다. <개정 2016.12.23.>

② 필기시험 합격자는 합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실기시험을 위한 원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취창업지원팀에 원서를 접수한다. <개정 2016.12.23.>

제14조(자격증 교부) ① 최종 합격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자격증을 교부 받는다.

1. 교부 : 자격검정 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에게 합격자 발표 후 자격증을 교부한다.

가. 신청기간 : 자격종목별 합격자 발표 후 1주일간 신청하면 수일 내로 교부한다. 교부기간이 지나면 수시로 신청가능하나 1개월 단위로 발급한다.

나. 신청장소 : 취창업지원팀 <개정 2016.12.23.>

다. 신청서류 : 신청서류(별지1호), 응시원서와 동일한 사진(3.5cmx4.5cm) 1매, 주민등록증(학생증, 기타 신분증)

라. 교부 수수료 : 자격종목에 관계없이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한다.

2. 재교부 : 자격증을 교부 받은 자가 자격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동일한 자격증을 다시 교부받기를 원하는 자는 재교부 받을 수 있다. 기타 신청장소, 서류 및 수수료는 신규교부와 동일하다.

제15조(민간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발급) 대경대학교 민간자격증 취득자가 자격취득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경우 취창업지원팀에서 민간자격 취득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12.23.>

제16조(보수교육) 자격증소지자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6 장 회 계

제17조(제 수수료) ① 수수료는 필기응시료, 실기응시료, 자격증 신청비로 구분한다.

1. 필기응시료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3.7.1.> <개정 2015.1.23., 2016.1.6., 2016.12.23.>

자 격 종 목	필기검정 수수료*	비 고
전통병과지도사	10,000원	
컨택트렌즈관리사	10,000원	
보안검색사	10,000원	
법률소양사	10,000원	
방과후 교사(골프)	-	
헤어디자이너	10,000원	

자 격 종 목	필기검정 수수료*	비 고
스포츠건강지도사	10,000원	
시기능훈련지도사	10,000원	
유지컬지도사	10,000원	
헬스휘트니스지도사	-	
동물사육관리사	10,000원	
주류제조전문가	10,000원	
상담심리재활사	10,000원	
몬테소리지도자	-	
미술치료사	30,000원	
아로마 컬러 리딩 자격증	10,000원	
연극교육 지도사 자격증	30,000원	
연기교육 지도사 자격증	30,000원	

*필기 또는 실기 검정 수수료는 무료로 할 수 있다.<신설 2016.12.23.>

2. 실기응시료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3.7.1.> <개정 2015.1.23., 2016.1.6., 2016.12.23.>

자격종목	실기검정 수수료*	비 고
전통병과지도사	30,000원	재료비 포함
콘택트렌즈관리사	70,000원	재료비 포함
보안검색사	10,000원	재료비 포함
법률소양사	-	
방과후 교사(골프)	50,000원	재료비 포함
헤어디자이너	40,000원	재료비 포함
스포츠건강지도사	40,000원	재료비 포함
시기능훈련지도사	30,000원	재료비 포함
유지컬지도사	-	
헬스휘트니스지도사	50,000원	재료비 포함
동물사육관리사	30,000원	재료비 포함
주류제조전문가	20,000원	재료비 포함
상담심리재활사	-	
몬테소리지도자	10,000원	
미술치료사	30,000원	재료비 포함
아로마 컬러 리딩 자격증	10,000원	재료비 포함
연극교육 지도사 자격증	30,000원	재료비 포함
연기교육 지도사 자격증	30,000원	재료비 포함

* 필기 또는 실기 검정 수수료는 무료로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3.>

3. 자격증 신청비는 5,000원으로 하며, 인쇄 업체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12.23.>

4. 제 수수료는 별지2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가능하며 반환신청서(별지 3호)를 취창업지원팀으로 접수한다. <개정 2016.12.23.>

제18조(수당지급) ① 해당 시행 년도 및 회차의 수수료로 수당을 지급하며, 만일 해당 시행 년도 및 회차의 수수료로 수당 지급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 예산잔고에서 집행할 수 있다.

- ② 수당지급은 ‘대경대학교 자격검정 수당지급 기준’ (별지4호)에 준하여 집행한다.
- ③ 제 수수료를 무료로 진행할 경우 수당지급을 아니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3.>

제19조(운영비 집행) ① 운영비 관리 통장은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한다.

- ② 본 운영비는 자격검정 운영 목적으로 사용가능하며, 그 지침은 우리대학 특별회계규칙에 따른다.

제 7 장 보 칙

제20조 시험문제의 출제와 관리에 관여한 자는 시험 종료 시 까지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21조 시험의 관리와 감독 및 채점에 관여한 자는 모든 수험생에게 공정하여야 한다.

제22조 제20조와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및 본 시험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23조 시험위원과 시험감독자 및 시험보조인력 등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24조 시험위원(출제위원, 감독위원, 채점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5조 답안지는 시험 시행일로부터 취창업지원팀에서 보존한다. <개정 2016.12.23.>

제26조 응시원서와 접수대장, 수험표, 답안지, 자격증 등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제반 서식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7조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규칙으로 이를 정한다.

제28조 총장은 자격검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시험일정, 제 수수료, 수당지급 등 제반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 이 규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자격증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에 의한다. <신설 2013.7.1.> <개정 2013.11.15., 2016.12.23.>

부칙

- ① 이 규정은 2011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15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1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